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3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이재강・이해민・김우영

김준형 • 박지원 • 박희승

정혜경 • 조계원 • 박지혜

김교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,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,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 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·도지사는 기회발 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 중 "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인구감소지역
- 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
- 3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,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역주변지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	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
지원)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	지원) ①
의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구	
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	
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	
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	
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	<u>타</u>
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	하는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
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	
<u>서</u>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	
지역의 시·도지사는 기회발전	
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	
<u> <신 설></u>	<u>1. 인구감소지역</u>
<u> <신 설></u>	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
	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
<u><신 설></u>	3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
	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
	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
	여구역주변지역, 반환공여구
	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